

‘화약고’ 여수산단

‘3명 화재사망’ 작업 전 잔여 화학물 제거 소홀 등 기본수칙 안지켜 2013년 대림산업 사고와 유사...노동청 허술한 안전 점검도 문제 최근 5년 화재 29건·안전사고 희생 10명...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3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단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폭발사고(광주일보 12월 14일 6면)와 관련, 안전관리 소홀이 빛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특히 17명의 사상자를 낸 2013년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 폭발사고와 유사성 등으로 ‘제 2의 대림참사’라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청의 허술한 안전 점검으로 참사가 반복되는 데 따른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산단 내 300개가 넘는 공장 대부분이 위험물질을 취급,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느슨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폭발을 동반한 화재 사고는 이 일산업체에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동원해 휘발성유기화학물(VOC)을 회수하기 위한 배관(직경 2.5cm) 연결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 등은 당시 저장탱크에 이소파라핀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배관 연결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안전보건 매뉴얼’상 작업 전 저장탱크에서 이소파라핀류 액체를 빼내는 작업을 소홀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현장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배관연결 작업의 경우 ‘화학 설비 정비보수작업’인 만큼 잔여 화학물을 모두 빼내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탱크(90㎡)에는 화학물질이 30% 가량 남아 있었



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배관연결 작업의 경우 ‘화학 설비 정비보수작업’인 만큼 잔여 화학물을 모두 빼내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탱크(90㎡)에는 화학물질이 30% 가량 남아 있었



15일 여수시청앞에서 ‘이일산업 폭발참사 대책위원회’는 여수국가산단 폭발화재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수산단 이일산업 폭발참사 대책위 제공)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악순환 언제까지

던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전기 등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한 잔여 화학물질 제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마저 무시했다는 얘기가.

2013년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 폭발사고가 에틸렌 분말을 빼내는 작업을 소홀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유사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직원이 2명 뿐인 영세업체가 도급액 1억짜리 공사를 맡아 일용직 노동자들을 투입, 위험한 화학물질을 보유한 공장에서 작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졌겠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 폭발사고 민간공동조사단 구성 및 산업단지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수산단은 가연성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업체를 비롯 311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 자칫 사고가 나면 대형 재난으로 번지는 ‘화약고’로 꼽힌다.

최근 5년(2016~2020년) 간 29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수산단 내 안전사고로 숨진 희생자도 10명에 이르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노동자 안전, 지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국가산단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각 부처의 나태함이 노동자 3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전남건강과생명 지키는사람들도 생명을 내고 “일반시설물보다 위험성이 큰 탱크, 배관 등 산업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기업의 이행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중 안맞는 납 벨트에 잠수작업까지 안전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다

공소장에 나타난 현장실습생 사고 현장

비상기체통도 없이 위험한 작업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운(18)군 (광주일보 10월 11일 6면)의 사고 현장은 운동 불발 투성이였다.

홍군은 작업 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비상기체통, 수중압력계 등 기본적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고 체중의 10% 수준의 납 벨트(6kg)를 착용해야 하지만 훨씬 무거운 11.3kg짜리 납벨트를 차고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5단독 재판부 심리로 진행중인 홍군 사고 재판과 관련, 검찰의 압체 대표 A(49)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현장실습생의 부실한 안전 실태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지난 7일 첫 재판이 열렸다.

홍군은 지난 10월 6일 오전 9시 27분께 A씨 지시로 수영복에 잠금장 착용하고 바다 속 1m까지 잠

수, 오프(7 t) 바닥에 붙은 파이프를 스크래퍼로 긁어내는 작업을 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잠수 작업을 해서는 안되지만 홍군은 작업에 투입됐다.

A씨는 당시 스쿠버 잠수 장비가 없어 홍군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공기통(2개), 납 벨트(11.3kg)를 가져왔고 오리발, 수경, 공기통을 연결한 부력조절기를 홍군에게 착용토록 하고 다시 작업에 투입했다.

2인 1조로 하는 잠수작업, 통상 체중의 10% 무게의 납벨트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 홍군은 납 벨트를 찬 상태에서 부력조절기나 오리발을 먼저 벗겨내면 부력조절에 실패, 물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경고도 듣지 못했다. 잠수작업을 할 때 필요한 비상기체통도 받지 않았고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 제공받아야 할 스쿠버 장비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 잠수 작업 전 이뤄져야 할 장비 점검도 없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홍군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놈 목소리’ 올해는 줄었다 광주 보이스피싱 578건...8.7% ↓

광주경찰청은 올해 11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5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33건)보다 8.7%(55건)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청은 특히 금융원과 협력, 고객 현금 인출 시 금융회사의 적극적 예방활동을 위한 신고지침을 마련하는 등 신고체계를 강화한 지난 5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2.4% 줄었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11월까지 15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9억2000만원(14.6%) 늘었지만 지난 5월 신고체계 강화 이후에는 피해액도 감소(6.6%)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따라 금융원과 협력해 ‘현금인출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원직적으로 신고’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

동을 강화해왔다. 경찰은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과 관련, 601명을 검거하는 한편, 해외(중국 연길·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8명도 붙잡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여러차례에 걸쳐 다른 목소리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 피싱일 경우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침 치료 환자 조치 소홀 농양 발생 한 의사·병원 6000만원 배상 판결

한방(韓方) 진료로 침을 맞은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막 외 농양(고름)을 발생하게 한 한의사와 병원측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1부는 A씨가 한의사와 한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측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운동 후 등이 아픈 증상으로 일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가 같은 날 다시 한방병원을 방문해 침 치료(침, 부항, 봉침)를 받았다. A씨는 이후 발열·통증·하체 위약감 등이 심해지면서 며칠 지나 종합병원에서 흉추 후방 압박 수술을 받았고 이후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병원과 한의사를 상대로 1억9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A씨의 혈액배양검사 결과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병원측은 A씨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방병원측이 시술

과정에서 A씨 피부에 있던 균이 체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A씨 체내에 포도상구균이 들어가 경막 외 농양을 발생하게 했거나 심화시켰고, 적수순상에 따른 불안전 마비 증상을 입게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침 치료를 받고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이를 넘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침 치료 외에도 몸에 주입하는 의료행위의 경우 경막 외 농양을 일으킬 원인균 침투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병원측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지숙 기자 dok2000@kwangju.co.kr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장성 토지(매매 분양)</h2>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p> <p>전남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p> <p>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p> <p>062-382-5500</p>